재고자산평가 조정명세서														
(T) I		년 기간 년 년		! 일부터	상 호			③성		명				
				! 일까지	2	사업자등록번호								
1.	재고자신	上 평가방	법 검	토										
(2	D자 산	별 ⑤3		평기방법 신고연월일		일 ⑥신고방법			⑦평가방법		⑧비 고			
2. 평가조정계산														
9과			목											
⑩품			명											
11)	규		격											
12	단		위											
⑬수			량											
본 인		④ 단	가											
계	상액	⑤ 금	액											
조정계산금액	신고	<16>단가												
	방법	<17>금액												
	선입	<18>단가												
	선출 법	<19>=	7액											
<20>조정액(<17> 또는<17>과 <19> 중 큰 금액 - ⑤)			9>											

210mm×297mm(신문용지 54g/m²(재활용품))

작 성 방 법

- 1. 재고자산 평가방법 검토의 경우, ⑥신고방법란은 본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기재하고. ⑦평가방법란은 본인이 실제로 평가한 방법을 기재합니다.
- 2. "2. 평가조정계산"의 경우, ⑨과목란 및 ⑩품명란은 자산별로 기재하고, ⑪규격란 및 ⑫단위 란은 재고자산수불부상의 내용에 의하여 기재합니다.
- 3. 瓜금액은 결산서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.
- 4.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별로 신고한 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을 계산하여 <16>·<18>단가란과 <17>·<19>금액란을 기재합니다.
- 5. <20>조정액란은 자산별로 <17>신고방법에 의한 금액(신고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<17>신고방법에 의한 금액과 <19>선입선출법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)과 <15>금액과의 차액을 기재하되, <20>의 금액이 양수(+)인 경우에는 그 금액 만큼을 총수입금액에산입하고, 음수(-)인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에산입합니다.
- 6. 평가손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품목은 합계액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, 품목별 계산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·비치하고, 과목별 자산별 합계액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.